



의안번호	제 2013 - 20 호
보 고 연 월 일	2013. 10. 25. (제52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1
1. 사건 접수	1
2. 처리 현황	12
II. 외국 양형위원회와의 교류	28
1. 개요	28
2.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 및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등 방문	28
3. 세부일정	29
III. 2013년도 국정감사 수감	30
1. 개요	30
2. 주요 보고내용	30
3. 질의 및 답변내용	30
IV. 양형위원회 워크숍 개최	32
1. 필요성	32
2. 일시·장소	32
3. 참석대상	32
4. 주제	32
5. 추진 경과	33
V. 양형자료분석관 워크숍 개최	34

1. 목적	34
2. 일시·장소 등	34
3. 주제발표	34

V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35

VI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36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36

- ☐ 별지1 「서영교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 ☐ 별지2 「서기호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I.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1. 사건 접수

○ 제1기 및 제2기,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로서 양형기준 시행 이후
2013. 6. 30.까지 법원에 접수된 사건의 죄명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

가. 제1기 대상범죄(2009. 7. 1. ~ 2013. 6. 30.)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2. 12.	2013. 1. ~ 2013. 6.	전체
살인 범죄	강간살인	4	1	5
	강도살인	31	7	38
	강도살인미수	16	1	17
	살인	1,078	136	1,214
	살인교사	3	0	3
	살인미수	1,481	187	1,668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19	4	23
	존속살해	105	12	117
	존속살해미수	54	5	59
	특가법(보복살인등)	0	1	1
	전체	2,792	354	3,146
뇌물 범죄	뇌물공여	2,041	145	2,186
	뇌물공여교사	2	0	2
	뇌물공여약속	0	1	1
	뇌물수수	1,448	116	1,564
	뇌물약속	0	2	2
	부정처사후수뢰	76	5	81
	수뢰후부정처사	89	5	94
	제3자뇌물교부	106	8	114
	제3자뇌물취득	113	11	124
	특가법(뇌물)	445	41	486
	전체	4,320	334	4,654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2. 12.	2013. 1. ~ 2013. 6.	전체
성 범 죄	강간	706	92	798
	강간살인	5	0	5
	강간상해	620	67	687
	강간치사	4	2	6
	강간치상	1,093	77	1,170
	강도강간	67	7	74
	강제추행	4,173	779	4,952
	강제추행상해	129	15	144
	강제추행치상	432	29	461
	미성년자의제강간	71	14	85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8	1	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83	7	9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2	0	2
	상습강제추행	5	1	6
	상습준강제추행	2	0	2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657	28	685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11	0	11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162	6	168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192	5	197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175	7	182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40	1	41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367	17	384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119	8	127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57	18	175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7	0	17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42	6	48
	성폭력범죄(특수강간)	470	11	481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313	14	327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50	2	52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124	0	124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2	2	4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2. 12.	2013. 1. ~ 2013. 6.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799	36	835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15	102	317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5	4	9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9	24	43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6	9	15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9	16	25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345	41	386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358	45	403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	53	32	85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49	36	85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85	22	307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23	30	53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	8	7	15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이유사성행위)	2	9	1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강간등)	21	19	40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피보호자간음)	0	3	3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50	12	62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711	120	831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184	32	216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98	56	254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20	3	23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37	9	46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783	121	90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247	35	282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112	25	137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291	74	365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20	5	25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2,608	186	2,794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치상)	0	1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283	230	513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	37	29	66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2. 12.	2013. 1. ~ 2013. 6.	전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추행)	24	25	49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	14	12	26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간음)	15	5	20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추행)	3	0	3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	64	50	114
	준강간	363	75	438
	준강간상해	1	1	2
	준강간치상	47	10	57
	준강제추행	620	119	739
	준강제추행상해	2	0	2
	준강제추행치사	1	0	1
	준강제추행치상	13	1	14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394	0	394
	특가법(강도강간)	1	0	1
	전체	19,638	2,887	22,525
강도 범죄	강도	536	48	584
	강도교사	2	0	2
	강도살인	67	0	67
	강도상해	2,317	219	2,536
	강도상해교사	1	1	2
	강도치사	19	1	20
	강도치상	174	18	192
	준강도	293	27	320
	준특수강도	46	7	53
	특가법(강도)	35	0	35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42	5	47
	특강법(특수강도)	2	0	2
	특수강도	1,914	231	2,145
	전체	5,448	557	6,005
횡령 ·	배임	1,802	133	1,935
	배임교사	0	1	1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2. 12.	2013. 1. ~ 2013. 6.	전체
배임 범죄	업무상배임	2,035	239	2,274
	업무상횡령	8,924	978	9,902
	특경가법(배임)	1,133	98	1,231
	특경가법(배임)교사	0	1	1
	특경가법(횡령)	1,529	144	1,673
	횡령	7,971	949	8,920
	전체	23,394	2,543	25,937
위증 범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0	5	5
	모해위증	69	6	75
	모해위증교사	1	1	2
	위증	4,390	474	4,864
	위증교사	582	83	665
	전체	5,042	569	5,611
무고 범죄	무고	6,502	593	7,095
	무고교사	10	12	22
	특가법(무고)	23	5	28
	특가법(무고)교사	1	0	1
	전체	6,536	610	7,146
총계		67,170	7,854	75,024

나. 제2기 대상범죄(2011. 7. 1. ~ 2013. 6. 30.)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2. 12.	2013. 1. ~ 2013. 6.	전체
약취 · 유인 범죄	간음약취	2	0	2
	간음유인	1	1	2
	미성년자약취	23	7	30
	미성년자유인	18	7	25
	영리약취	2	0	2
	영리유인	3	2	5
	추행유인	3	1	4
	특가법(약취·유인)	21	0	21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2. 12.	2013. 1. ~ 2013. 6.	전체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53	5	58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교사	0	1	1
	전체	126	24	150
사기 범죄	사기	51,209	17,429	68,638
	사기교사	0	1	1
	상습사기	214	72	286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2	0	2
	준사기	26	6	32
	컴퓨터등사용사기	452	242	694
	특경가법(사기)	1,238	345	1,583
	전체	53,141	18,095	71,236
절도 범죄	문화재보호법위반	45	13	58
	산림보호법위반	69	31	10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342	73	415
	상습절도	2	0	2
	상습특수절도	2	0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857	238	1,095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2	1	3
	야간방실침입절도	95	21	116
	야간선박침입절도	2	0	2
	야간주거침입절도	607	116	723
	야간주거침입절도교사	1	0	1
	절도	9,870	3,247	13,117
	절도교사	20	18	38
	특가법(산림)	68	6	74
	특가법(절도)	3,158	1,149	4,307
	특수절도	5,098	1,722	6,820
	특수절도교사	2	9	11
	전체	20,240	6,644	26,884
공 문	공문서변조	142	48	190
	공문서변조교사	1	1	2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2. 12.	2013. 1. ~ 2013. 6.	전체
서 범 죄	공문서부정행사	691	119	810
	공문서부정행사교사	5	3	8
	공문서위조	526	104	63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797	180	977
	공전자기록등위작	24	2	26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0	1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279	75	354
	변조공문서행사	12	0	1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34	0	3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21	1	22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2	0	2
	위조공문서행사	50	2	52
	자격모용공문서작성	1	0	1
	허위공문서작성	69	22	91
	허위작성공문서행사	8	1	9
	전체	2,662	559	3,221
사 문 서 범 죄	변조사문서행사	132	5	137
	사문서변조	86	44	130
	사문서부정행사	8	1	9
	사문서위조	2,138	640	2,778
	사문서위조교사	5	4	9
	사전자기록등변작	9	1	10
	사전자기록등위작	39	4	43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	0	2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2	0	2
	위조사문서행사	189	22	21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88	25	11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7	0	7
	허위작성진단서행사	5	0	5
	허위진단서작성	15	2	17
	허위진단서작성교사	1	1	2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2. 12.	2013. 1. ~ 2013. 6.	전체
	전체	2,724	751	3,475
공무 집행 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8,588	1,721	10,309
	공무집행방해교사	1	0	1
	공용건조물파괴	3	0	3
	공용물건무효	3	0	3
	공용물건손상	960	185	1,145
	공용물건은닉	2	3	5
	공용서류무효	15	4	19
	공용서류손상	87	16	103
	공용서류은닉	5	0	5
	위계공무집행방해	418	92	510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0	2	2
	특수공무집행방해	485	150	63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71	49	320
	특수공용물건손상	15	5	20
	전체	10,853	2,227	13,080
식품 · 보건 범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142	58	200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6	0	16
	농수산물위생관리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784	303	1,087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0	1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0	10	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433	121	55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교사	0	1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4	11	15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3	0	3
	식품위생법위반	2,013	737	2,750
	식품위생법위반교사	3	0	3
	약사법위반	493	187	680
	의료법위반	1,220	361	1,581
	의료법위반교사	2	0	2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3	0	3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2. 12.	2013. 1. ~ 2013. 6.	전체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89	111	200
	화장품법위반	27	15	42
	전체	5,232	1,916	7,148
마약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901	206	1,1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65	15	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4,849	1,596	6,44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624	188	812
	특가법(마약)	1	0	1
	특가법(향정)	17	5	22
	전체	6,457	2,010	8,467
총계		101,435	32,226	133,661

다. 제3기 대상범죄(2012. 7. 1. ~ 2013. 6. 30.)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2. 12.	2013. 1. ~ 2013. 6.	전체
증권 · 금융 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71	169	240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0	14	14
	증권거래법위반	24	33	57
	특경가법(수재등)	11	24	35
	특경가법(알선수재)	52	44	96
	특경가법(증재등)	13	17	30
	전체	171	301	472
지식 재산 범죄	디자인보호법위반	12	12	2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81	26	107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9	0	9
	상표법위반	471	457	928
	실용신안법위반	2	3	5
	저작권법위반	410	289	699
	특허법위반	10	2	12
	전체	995	789	1,784
폭력	상습폭행	1	1	2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2. 12.	2013. 1. ~ 2013. 6.	전체
범죄	상해	8,219	7,340	15,559
	상해교사	1	0	1
	상해치사	57	37	94
	존속상해	58	42	100
	존속상해치사	1	6	7
	존속중상해	2	0	2
	존속폭행	14	14	28
	존속폭행치사	1	0	1
	존속폭행치상	2	0	2
	존속협박	9	0	9
	중상해	29	21	50
	특가법(보복범죄등)	0	26	26
	특가법(보복상해등)	1	8	9
	특가법(보복폭행등)	2	10	12
	특가법(보복협박등)	3	12	15
	특가법(운전자폭행등)	371	350	721
	특수존속협박	1	0	1
	특수폭행	35	27	62
	특수폭행치사	1	0	1
	특수폭행치상	1	2	3
	특수협박	49	50	99
	폭처법(공동상해)	2,227	1,940	4,167
	폭처법(공동상해)교사	2	0	2
	폭처법(공동존속상해)	5	4	9
	폭처법(공동폭행)	480	451	931
	폭처법(공동폭행)교사	0	4	4
	폭처법(공동협박)	53	53	106
	폭처법(단체등의공동상해)	3	1	4
	폭처법(단체등의공동폭행)	3	3	6
	폭처법(단체등의공동협박)	3	1	4
	폭처법(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상해)	1	0	1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2. 12.	2013. 1. ~ 2013. 6.	전체
	폭처법(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폭행)	0	1	1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상해)	16	8	24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폭행)	2	3	5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협박)	5	3	8
	폭처법(상습상해)	38	37	75
	폭처법(상습존속상해)	0	3	3
	폭처법(상습존속폭행)	5	2	7
	폭처법(상습존속협박)	1	0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상해)	1	1	2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존속상해)	0	1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존속협박)	0	1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폭행)	0	1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협박)	1	0	1
	폭처법(상습폭행)	30	27	57
	폭처법(상습협박)	9	3	12
	폭처법(야간.공동상해)	3	10	13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	2,743	2,292	5,035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교사	5	4	9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상해)	19	6	25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폭행)	3	2	5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협박)	7	4	11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	562	507	1,069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교사	0	1	1
	폭처법(집단.흥기등협박)	759	553	1,312
	폭행	2,928	3,102	6,030
	폭행치사	36	41	77
	폭행치상	98	99	197
	협박	438	451	889
	협박교사	1	1	2
	전체	19,345	17,567	36,912
교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5,775	5,203	10,978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2. 12.	2013. 1. ~ 2013. 6.	전체
범죄	특가법(도주차량)	2,799	2,518	5,317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1,816	1,613	3,429
	전체	10,390	9,334	19,724
선거 범죄	공직선거법위반	518	417	93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0	3	3
	전체	518	420	938
총계		31,419	28,411	59,830

※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접수건수임.

- 위 통계에는 피고인이 소년인 사건, 정식재판청구사건, 미수범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양형기준이 적용될 사건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임

2. 처리 현황

- 제1기 및 제2기,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로서 양형기준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되어 2013. 6. 30. 까지 제1심 법원에서 처리된 사건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가. 범죄군별 처리건수

(1)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09. 7. 1. ~ 2013. 6. 3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09. 7. ~ 2012. 12.	살인범죄	수	2,494	1	0	2,495
		비율	100.0%	0.0%	0.0%	100.0%
	뇌물범죄	수	1,871	1,210	48	3,129
		비율	59.8%	38.7%	1.5%	100.0%
	성범죄	수	11,895	1,828	1,238	14,961
		비율	79.5%	12.2%	8.3%	100.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강도범죄	수	4,651	12	0	4,663
		비율	99.7%	0.3%	0.0%	100.0%
	횡령·배임범죄	수	2,910	13,010	3,514	19,434
		비율	15.0%	66.9%	18.1%	100.0%
	위증범죄	수	91	3,490	754	4,335
		비율	2.1%	80.5%	17.4%	100.0%
	무고범죄	수	181	3,868	1,154	5,203
		비율	3.5%	74.3%	22.2%	100.0%
2013. 1. ~ 2013. 6.	살인범죄	수	333	0	0	333
		비율	100.0%	0.0%	0.0%	100.0%
	뇌물범죄	수	209	98	22	329
		비율	63.5%	29.8%	6.7%	100.0%
	성범죄	수	2,089	510	265	2,864
		비율	72.9%	17.8%	9.3%	100.0%
	강도범죄	수	562	9	0	571
		비율	98.4%	1.6%	0.0%	100.0%
	횡령·배임범죄	수	421	1,616	570	2,607
		비율	16.1%	62.0%	21.9%	100.0%
	위증범죄	수	10	407	142	559
		비율	1.8%	72.8%	25.4%	100.0%
	무고범죄	수	18	441	177	636
		비율	2.8%	69.3%	27.8%	100.0%
	전체	수	3,642	3,081	1,176	7,899
		비율	46.1%	39.0%	14.9%	100.0%

(2)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1. 7. 1. ~ 2013. 6. 3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1. 7. ~ 2012. 12.	약취·유인범죄	수	101	24	0	125
		비율	80.8%	19.2%	0.0%	100.0%
	사기범죄	수	2,165	26,349	9,394	37,908
		비율	5.7%	69.5%	24.8%	100.0%
	절도범죄	수	1,718	12,263	3,070	17,051
		비율	10.1%	71.9%	18.0%	100.0%
	공문서범죄	수	162	958	518	1,638
		비율	9.9%	58.5%	31.6%	100.0%
	사문서범죄	수	115	1,328	723	2,166
		비율	5.3%	61.3%	33.4%	100.0%
	공무집행방해범죄	수	524	4,000	3,491	8,015
		비율	6.5%	49.9%	43.6%	100.0%
	식품·보건범죄	수	71	842	2,858	3,771
		비율	1.9%	22.3%	75.8%	100.0%
	마약범죄	수	668	4,442	91	5,201
		비율	12.8%	85.4%	1.7%	100.0%
2013. 1. ~ 2013. 6.	약취·유인범죄	수	28	14	0	42
		비율	66.7%	33.3%	0.0%	100.0%
	사기범죄	수	1,048	12,051	3,540	16,639
		비율	6.3%	72.4%	21.3%	100.0%
	절도범죄	수	696	4,895	1,136	6,727
		비율	10.3%	72.8%	16.9%	100.0%
	공문서범죄	수	23	428	182	633
		비율	3.6%	67.6%	28.8%	100.0%
	사문서범죄	수	42	569	280	891
		비율	4.7%	63.9%	31.4%	100.0%
	공무집행방해범죄	수	146	890	1,208	2,244
		비율	6.5%	39.7%	53.8%	100.0%
	식품·보건범죄	수	36	507	1,086	1,629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비율	2.2%	31.1%	66.7%	100.0%
	마약범죄	수	332	1,588	24	1,944
		비율	17.1%	81.7%	1.2%	100.0%
	전체	수	2,351	20,942	7,456	30,749
		비율	7.6%	68.1%	24.2%	100.0%

(3)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2. 7. 1. ~ 2013. 6. 3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2. 7. ~ 2012. 12.	증권·금융범죄	수	13	18	10	41
		비율	31.7%	43.9%	24.4%	100.0%
	지식재산범죄	수	1	219	328	548
		비율	0.2%	40.0%	59.9%	100.0%
	폭력범죄	수	558	4,935	5,738	11,231
		비율	5.0%	43.9%	51.1%	100.0%
	교통범죄	수	932	3,407	2,123	6,462
		비율	14.4%	52.7%	32.9%	100.0%
	선거범죄	수	278	18	0	296
		비율	93.9%	6.1%	0.0%	100.0%
2013. 1. ~ 2013. 6.	증권·금융범죄	수	1,782	8,597	8,199	18,578
		비율	9.6%	46.3%	44.1%	100.0%
	증권·금융범죄	수	65	66	10	141
		비율	46.1%	46.8%	7.1%	100.0%
	지식재산범죄	수	3	240	510	753
		비율	0.4%	31.9%	67.7%	100.0%
	폭력범죄	수	790	6,971	8,810	16,571
		비율	4.8%	42.1%	53.2%	100.0%
	교통범죄	수	451	5,780	2,856	9,087
		비율	5.0%	63.6%	31.4%	100.0%
	선거범죄	수	440	15	0	455
		비율	96.7%	3.3%	0.0%	100.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전체	수	1,749	13,072	12,186	27,007
		비율	6.5%	48.4%	45.1%	100.0%

※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처리건수임.

나. 세부죄명별 처리건수

(1)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09. 7. 1. ~ 2013. 6. 30.)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2. 12.	2013. 1. ~ 2013. 6.	전체
살인 범죄	강간살인	2	1	3
	강도살인	20	8	28
	강도살인미수	19	1	20
	살인	971	124	1,095
	살인교사	0	3	3
	살인미수	1,327	173	1,500
	살인미수교사	2	0	2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0	1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13	2	15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미수	1	0	1
	존속살해	92	10	102
	존속살해미수	46	8	54
	특가법(보복범죄등)	0	2	2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단체등의살인)	2	0	2
	전체	2,495	333	2,828
뇌물 범죄	뇌물공여	1,475	145	1,620
	뇌물공여교사	2	1	3
	뇌물공여약속	0	1	1
	뇌물수수	980	110	1,090
	뇌물요구	0	1	1
	부정처사후수뢰	56	7	63
	수뢰후부정처사	67	8	75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2. 12.	2013. 1. ~ 2013. 6.	전체
	제3자뇌물교부	88	3	91
	제3자뇌물취득	94	7	101
	특가법(뇌물)	367	46	413
	전체	3,129	329	3,458
성 범 죄	강간	472	84	556
	강간살인	3	0	3
	강간상해	549	64	613
	강간치사	3	2	5
	강간치상	907	105	1,012
	강도강간	53	8	61
	강제추행	2,712	686	3,398
	강제추행상해	134	20	154
	강제추행치상	383	54	437
	미성년자간음	0	2	2
	미성년자의제강간	50	11	61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9	1	1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52	6	58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1	0	1
	미성년자추행	0	1	1
	상습강제추행	2	1	3
	상습준강제추행	1	0	1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567	42	609
	성폭력범죄(13세미만위계등간음)	0	1	1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8	0	8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145	7	152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154	1	155
	성폭력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1	0	1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155	5	160
	성폭력범죄(장애인위계등간음)	0	1	1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40	1	41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335	20	355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2. 12.	2013. 1. ~ 2013. 6.	전체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112	5	117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31	7	138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5	0	15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29	1	30
	성폭력범죄(특수강간)	334	19	353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272	36	308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35	2	37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76	0	76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708	57	765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24	111	235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3	7	10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5	17	32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6	3	9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4	15	19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유사성행위)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285	36	32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사)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279	37	316
	성폭력범죄특례법(미성년자강간등)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간음)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	28	26	54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31	25	56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53	25	278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13	29	42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	4	12	16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력등추행)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유사성행위)	4	7	1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강간등)	0	13	13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피보호자간음)	0	2	2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2. 12.	2013. 1. ~ 2013. 6.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44	12	56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616	115	731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139	31	170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55	58	213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21	8	29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38	5	43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546	92	638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247	28	275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88	15	103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187	43	230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9	7	16
	아동·청소년성보호법	4	0	4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2,233	248	2,481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143	250	393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	20	41	6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추행)	18	22	40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	10	10	20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간음)	7	11	18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추행)	1	2	3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	42	51	93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교사	1	0	1
	준강간	214	79	293
	준강간상해	1	0	1
	준강간치상	40	10	50
	준강제추행	419	111	530
	준강제추행상해	2	0	2
	준강제추행치사	1	0	1
	준강제추행치상	14	0	14
	청소년성보호법	1	0	1
	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4	0	4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2. 12.	2013. 1. ~ 2013. 6.	전체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186	0	186
	특가법(강도강간)	1	0	1
	전체	14,961	2,864	17,825
강도 범죄	강도	475	52	527
	강도교사	1	0	1
	강도살인	63	0	63
	강도상해	1,853	200	2,053
	강도상해교사	1	0	1
	강도치사	25	3	28
	강도치상	150	21	171
	준강도	283	27	310
	준특수강도	43	5	48
	특가법(강도)	40	2	42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38	5	43
	특강법(특수강도)	1	0	1
	특수강도	1,690	256	1,946
	전체	4,663	571	5,234
	배임	1,479	154	1,633
	배임교사	0	1	1
횡령· 배임 범죄	업무상배임	1,450	197	1,647
	업무상횡령	7,538	1,013	8,551
	특경가법(배임)	842	116	958
	특경가법(횡령)	1,332	201	1,533
	횡령	6,793	925	7,718
	전체	19,434	2,607	22,041
	모해위증	53	7	60
	위증	3,663	478	4,141
위증 범죄	위증교사	619	74	693
	전체	4,335	559	4,894
무고 범죄	무고	5,169	620	5,789
	무고교사	9	12	21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2. 12.	2013. 1. ~ 2013. 6.	전체
	특가법(무고)	24	4	28
	특가법(무고)교사	1	0	1
	전체	5,203	636	5,839
총계		54,220	7,899	62,119

(2)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1. 7. 1. ~ 2013. 6. 30.)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2. 12.	2013. 1. ~ 2013. 6.	전체
약취· 유인 범죄	간음약취	1	2	3
	간음유인	0	3	3
	미성년자약취	18	6	24
	미성년자유인	13	9	22
	영리약취	2	1	3
	영리유인	2	0	2
	추행유인	0	3	3
	특가법(약취·유인)	17	5	22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72	12	84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교사	0	1	1
	전체	125	42	167
사기 범죄	사기	36,291	15,819	52,110
	사기교사	2	1	3
	상습사기	174	73	247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2	0	2
	준사기	22	6	28
	컴퓨터등사용사기	470	319	789
	특경가법(사기)	947	421	1,368
	전체	37,908	16,639	54,547
절도 범죄	문화재보호법위반	23	11	34
	산림보호법위반	45	23	6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9	84	293
	상습절도	7	0	7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2. 12.	2013. 1. ~ 2013. 6.	전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642	280	9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2	0	2
	야간방실침입절도	75	39	114
	야간선박침입절도	2	0	2
	야간주거침입절도	522	188	710
	야간주거침입절도교사	0	1	1
	절도	7,963	2,891	10,854
	절도교사	17	13	30
	특가법(산림)	32	18	50
	특가법(상습절도)	2	1	3
	특가법(절도)	2,912	1,205	4,117
	특수절도	4,594	1,969	6,563
	특수절도교사	4	4	8
	전체	17,051	6,727	23,778
공 문 서 범 죄	공도화변조	1	0	1
	공문서변조	88	60	148
	공문서변조교사	1	0	1
	공문서부정행사	330	104	434
	공문서부정행사교사	2	2	4
	공문서위조	336	115	451
	공문서위조교사	1	2	3
	공용서류무효	0	1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602	213	81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교사	1	0	1
	공전자기록등위작	15	4	19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0	1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70	85	255
	변조공문서행사	4	0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3	0	3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0	4	4
	위조공문서행사	28	9	37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2. 12.	2013. 1. ~ 2013. 6.	전체
	허위공문서작성	55	32	87
	허위공문서작성교사	0	1	1
	허위공문서행사	1	0	1
	전체	1,638	633	2,271
사 문 서 범 죄	변조사문서행사	9	2	11
	사문서변조	107	50	157
	사문서부정행사	5	0	5
	사문서위조	1,875	756	2,631
	사문서위조교사	4	4	8
	사문서위조행사	1	0	1
	사전자기록등변작	5	1	6
	사전자기록등위변작	2	0	2
	사전자기록등위작	26	5	31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	0	2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0	1
	위조사문서행사	62	32	94
	위조사서명행사	2	0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60	30	90
	허위진단서작성	7	9	16
	전체	2,166	891	3,057
공 무 집 행 방 해 범 죄	공무집행방해	6,068	1,760	7,828
	공무집행방해교사	1	0	1
	공용건조물파괴	3	0	3
	공용물건무효	2	0	2
	공용물건손상	871	197	1,068
	공용물건손상교사	2	0	2
	공용물건은닉	1	0	1
	공용서류무효	10	8	18
	공용서류손상	77	18	95
	공용서류은닉	5	0	5
	공용전자기록등손상	1	0	1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2. 12.	2013. 1. ~ 2013. 6.	전체
	위계공무집행방해	322	66	388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0	2	2
	특수공무집행방해	407	103	51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0	1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27	84	311
	특수공용건조물파괴	1	0	1
	특수공용물건손상	17	5	22
	전체	8,015	2,244	10,259
식품 · 보건 범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81	42	123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0	0	10
	농수산물위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688	270	958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0	1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306	136	44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1	1	2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1	0	1
	식품위생법위반	1,433	636	2,069
	식품위생법위반교사	0	3	3
	약사법위반	353	148	501
	의료법위반	793	337	1,130
	의료법위반교사	0	1	1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4	0	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71	45	116
	화장품법위반	30	9	39
	전체	3,771	1,629	5,400
마약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593	228	8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54	14	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4,001	1,533	5,53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544	162	706
	특가법(마약)	1	1	2
	특가법(향정)	8	6	14
	전체	5,201	1,944	7,145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2. 12.	2013. 1. ~ 2013. 6.	전체
	총계	75,875	30,749	106,624

(3)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2. 7. 1. ~ 2013. 6. 30.)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2. 12.	2013. 1. ~ 2013. 6.	전체
증권 · 금융 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3	61	74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0	1	1
	증권거래법위반	4	11	15
	특경가법(수재등)	3	14	17
	특경가법(알선수재)	18	40	58
	특경가법(증재등)	3	14	17
	전체	41	141	182
지식 재산 범죄	디자인보호법위반	6	9	1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3	8	11
	상표법위반	327	385	712
	실용신안법위반	1	3	4
	저작권법위반	208	345	553
	특허법위반	3	3	6
	전체	548	753	1,301
폭력 범죄	상습폭행	0	1	1
	상해	4,640	6,681	11,321
	상해교사	0	1	1
	상해치사	26	38	64
	존속상해	37	53	90
	존속상해치사	0	5	5
	존속중상해	2	1	3
	존속폭행	4	15	19
	존속폭행치사	0	1	1
	존속폭행치상	1	2	3
	존속협박	4	2	6
	중상해	10	24	34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2. 12.	2013. 1. ~ 2013. 6.	전체
	집단·흥기등폭행	1	0	1
	특가법(보복범죄등)	50	69	119
	특가법(보복상해등)	0	4	4
	특가법(보복폭행등)	0	7	7
	특가법(보복협박등)	0	17	17
	특가법(운전자폭행등)	254	387	641
	특수존속협박	1	0	1
	특수폭행	17	41	58
	특수폭행치상	0	1	1
	특수협박	28	41	69
	폭처법(공동상해)	1,267	1,918	3,185
	폭처법(공동상해)교사	0	1	1
	폭처법(공동존속상해)	2	3	5
	폭처법(공동폭행)	269	446	715
	폭처법(공동협박)	33	40	73
	폭처법(단체등의공동상해)	0	3	3
	폭처법(단체등의공동협박)	1	0	1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상해)	2	21	23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폭행)	0	5	5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협박)	3	3	6
	폭처법(상습상해)	31	26	57
	폭처법(상습존속폭행)	3	4	7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상해)	0	2	2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존속상해)	0	1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폭행)	0	1	1
	폭처법(상습폭행)	30	17	47
	폭처법(상습협박)	7	5	12
	폭처법(야간·공동상해)	2	5	7
	폭처법(야간·공동협박)	0	1	1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	1,574	2,391	3,965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교사	2	2	4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2. 12.	2013. 1. ~ 2013. 6.	전체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상해)	12	15	27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폭행)	5	3	8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협박)	7	8	15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	355	486	841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교사	0	1	1
	폭처법(집단·흥기등협박)	527	717	1,244
	폭처법(흥기등상해)	11	0	11
	폭처법(흥기등협박)	8	0	8
	폭행	1,694	2,504	4,198
	폭행교사	1	2	3
	폭행치사	16	38	54
	폭행치상	47	111	158
	협박	247	400	647
	전체	11,231	16,571	27,802
교통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547	5,153	8,700
	특가법(도주차량)	1,672	2,380	4,052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1,243	1,554	2,797
	전체	6,462	9,087	15,549
선거 범죄	공직선거법위반	296	455	751
	전체	296	455	751
총계		18,578	27,007	45,585

※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처리건수임.

II. 외국 양형위원회와의 교류

1. 개요

- 양형위원회가 합리적인 양형정책을 수립하고 양형기준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외국 양형위원회의 각종 노하우와 축적된 경험을 습득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음
- 미국의 양형기준제도 시행 경과와 양형심리절차에 관한 최신 자료 등을 수집하고 2011년 방문을 계기로 확대된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와의 교류·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한국 양형위원회의 활동 성과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함

2.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 및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등 방문

- 방 문 자 : 조병현 위원, 이건리 위원, 이광수 위원, 서보학 위원, 윤영지원단장
- 기 간 : 2012. 9. 10.(화) ~ 2012. 9. 18.(일) [7박 9일]
- 국 가 : 미국
- 방문기관 :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메릴랜드 주 형사법원, 뉴욕 주 형사법원, 뉴욕 주 문제해결법원

3. 세부일정

일차	월일	시행지역 (국가)	교통편	현지시각	주요 일정
1	9.10.(화)	한국 (인천)	KE093	10:30	인천공항 출발
		미국 (워싱턴DC)		11:10	워싱턴DC Dulles 공항 도착
2	9.11.(수)	미국 (워싱턴DC)		10:00	미 연방 양형위원회 방문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3	9.12.(목)	미국 (워싱턴DC)		10:00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방문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14:00	메릴랜드 주 형사법원 방문 (The 7th Circuit Court of Maryland)
4	9.13.(금)	미국 (워싱턴DC)	Amtrak (Express)	09:00	워싱턴DC 출발
		미국 (뉴욕)		11:45 14:00	- 뉴욕 도착 - 유엔 본부 방문
5	9.14.(토)	미국 (뉴욕)			방문결과 중간정리 및 기관방문 준비
6	9.15.(일)	미국 (뉴욕)			방문결과 중간정리 및 기관방문 준비
7	9.16.(월)	미국 (뉴욕)		10:00	- 브루클린 소재 뉴욕주 형사법원 방문 (Kings County Supreme Court Criminal Term)
				12:00	- 브루클린 소재 뉴욕주 문제해결법원 방문 (Kings County Supreme Court Problem Solving Courts)
8	9.17.(화)	미국 (뉴욕)	KE086	00:50	뉴욕 JFK 공항 출발
9	9.18.(수)	한국 (인천)		04:15	인천공항 도착

Ⅲ. 2013년도 국정감사 수감

1. 개요

- 2013. 10. 14. 10:00 대법원 제401호 대회의실에서 2013년도 국정감사 실시
- 위원장이 직접 ‘2013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을 보고하고,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함

2. 주요 보고내용

- 양형위원회 현황, 2013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향후 계획

3. 질의 및 답변내용

- 불법적인 시위 등 집단적 폭력행위에 대한 양형기준 수립의 필요성이 절실한데 이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수립되어 있는지(권성동 의원)
 - 업무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의결하였음(위원장)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평균형량이 3.84년인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서영교 의원)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전체 성범죄 중 강제추행범죄가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평균형량이 낮은 것이고, 13세 미만 대상 강간유형 성범죄의 평균형량은 8.15년으로 엄정한 형이 선고되고 있음(위원장)
- 국가보안법 위반의 반국가사범 또는 폭력시위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조속히 양형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위원장님의 의견(김희선 의원)
 - 위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사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며,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사회 각계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양형기준 수립을 검토해 보겠음(위원장)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개정 법률안은 비례의 원칙 및 형벌 개별화 원칙에 반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신 ‘16세 미만’을 가중인자로 반영하는 내용으로 성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권성동 의원)
 - 성범죄 양형기준이 16세 미만 피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을 이미 양형인자로 삼고 있으며,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한 수정 양형기준이 2013. 6. 19.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 수정에 따른 시행성과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위원장)
-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약취·유인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68%에 불과한데, 준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 바람 (서영교 의원)
 - 별지1과 같이 서면으로 답변하였음
- 선거범죄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중 당선 유무효형이 함께 있는 것이 있어 법관에게 주어진 재량이 다소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데, 양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당선무효형을 기준으로 예측가능한 양형기준을 수립해 주기 바람(이춘석 의원)
- 양형위원회는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을 시민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적정 구성원 비율 및 그 사유 등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을 서면으로 답변 바람(서기호 의원)
 - 별지2와 같이 서면으로 답변하였음

IV. 양형위원회 워크숍 개최

1. 필요성

- 전문위원들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제4기 전반기 설정 대상범죄군의 양형기준 설정방안에 대한 양형위원과 전문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 기회 마련
- 워크숍을 통하여 양형위원과 전문위원의 친목을 도모하고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 마련

2. 일시 · 장소

- 2013. 10. 25.(금) ~ 10. 26.(토) 【1박 2일】
- 무주 덕유산리조트(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43-15)

3. 참석대상

가. 양형위원

- 양형위원회 위원장 포함 13명

나. 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포함 13명

다. 운영지원단

- 운영지원단장
- 워크숍 진행요원 : 기획운영과장 및 직원, 속기사

4. 주제

- 제4기 전반기 설정 대상범죄군의 양형기준 설정방안 심의
- 양형위원회 향후 일정 논의

5. 추진 경과

- 2012. 10. 양형위원회 워크숍 개최지 결정 및 현지 답사
- 2012. 10. 10. 양형위원회 워크숍 개최 계획 보고
- 2012. 10. 11. 양형위원회 워크숍 세부 계획 결재
- 2012. 10. 25. 양형위원회 워크숍 및 양형위원회 제52차 회의

V. 양형자료분석관 워크숍 개최

1. 목적

- 양형자료분석에 관한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을 통하여 양형자료분석업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업무의 통일성 및 분석관의 전문성을 제고
- 분석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 습득
- 분석관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소속감 제고

2. 일시 · 장소 등

- 일 시 : 2012. 9. 27.(금) ~ 9. 28.(토) 【1박 2일】
- 장 소 : kobaco연수원(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화양리 45)
- 참 석 : 양형자료분석관(15명) 및 운영지원단 직원
※ 운영지원단장, 기획운영과장 참관

3. 주제발표

	주 제	발 표 자
1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양형인자 적용과 운영점검	자료조사과장
2	교통범죄 양형기준 운영점검에 관한 실무 검토	서두현
3	폭력범죄 운영점검의 몇가지 유의점	전용준
4	양형자료조사표 작성에 관한 검토	이형관

Ⅵ.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73차	2013. 9. 30. 16:00	○ 변호사법 위반,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검토
	제74차	2013. 10. 15. 16:00	○ 성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검토

Ⅶ.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 접수의견

연번	접수일자	의견요지
1	2013. 9. 12.	○ 성범죄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해달라는 의견 개진
2	2013. 9. 20.	○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여달라는 의견 개진
3	2013. 9. 20.	○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의견 개진
5	2013. 10. 16.	○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반성’으로 인한 형 감경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

[별지1]

■ 서영교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 2011년 7월 1일 시행된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 적용사례가 적어 현재의 자료는 통계로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2012년 기준 55건)
- 다만, 부준수 사건 중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추행·간음·영리 목적 약취·유인)으로 기소된 사건이 적지 않은데, 위 사건에 해당하는 ‘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유형의 권고형량은 특가법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기본영역이 ‘징역 4년 - 6년’으로 규범적으로 높게 설정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사안이 무겁지 않거나 공범의 경우 가담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권고형량 대로 높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금년 4. 5. 특가법 개정으로 위 규정이 삭제되어 개정 형법이 적용되고 위 개정 형법상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서 위 특가법보다 현저히 낮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타당성을 위해 부득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위와 같은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약취·유인 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며, 향후 양형기준 수정 작업을 거친 후 양형기준이 실무에 정착되면 약취·유인 범죄 양형기준 준수율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별지2]

■ 서기호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 법원조직법 제81조의3 제3항은 양형위원 구성을 법관 4인, 검사 2인, 변호사 2인, 법학교수 2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이 해당 직역의 인사를 양형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마련 시 공청회, 공개토론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언론계, 교육계, 시민단체, 법학계 등 각계각층의 인사 11인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양형위원회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률 개정에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